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응급의료 전용헬기 기종 기준을 「항공기등록규칙(국토교통부령)」 별지 제12호의 “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”의 명칭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, 기령 연장 및 안전장치 추가 등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상의 안전성과 합리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 전용헬기 기령을 15년 이하로 연장(안 별표 15의2 1호 가목.)
- 나. 기종 기준 용어 정비(안 별표 15의2 1호 가목.)
- 다. 응급의료 전용헬기 안전장치 항목 추가(안 별표15의2 1호 나목.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0000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5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·안전장치·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

구 분	내 용
가. 기종	1) 항공기의 기령(機齡)이 <u>15년 이하</u> 일 것 2) <u>항공기 제원 상</u> 8인승 이상으로서 동시에 2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 3) <u>항공기 제원 상</u> 최대이륙중량이 2천500킬로그램 이상일 것 4) <u>항공기 제원 상 항속거리</u> 가 600킬로미터 이상일 것 5) 쌍발엔진(Twin Engine)을 장착할 것
나. 안전장치	1) 헬기 위치 추적 장치 2)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(ELT) 3) 항공기 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4) 조종실 음성기록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(<u>CVR/FDR</u>) 5)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6) <u>해상 운항이 가능한 장비(Floating Device). 단, 해상 운항이 필요한 운용지역에 한함</u>
다. 의료장비	1)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들것 2개 2) 고정식 및 이동식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3) 인공호흡기 4) 환자감시장치 및 <u>심장충격기</u> 5)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흡인기 6) 경추고정장비, 견인부목, 척추고정판 및 골반고정기 7) 주입속도의 설정과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주입펌프 2개

	8) 수액걸이 4개 9)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10) 화학검사장비 및 심장호소검사장비 11) 자동흡부압박장비 12) 청진기, 펜라이트, 후두경 세트, 마질 겸자, 하임리히 밸브, 백 밸브마스크,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을 포함한 구급가방
--	---

(주) 항공기 제원은 「항공기등록규칙」 별지 제12호 서식의 “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” 기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60